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 목 차 >

제 1 장 총칙 (제1조~제5조)	1
제 2 장 회원 (제6조~제8조)	2
제 3 장 동아리 총회 (제9조~제14조)	2
제 4 장 동아리 총투표 (제15조~제20조)	3
제 5 장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21조~제30조)	4
제 6 장 총동아리연합회장 · 부총동아리연합회장 (제31조~제36조)	7
제 7 장 총동아리운영위원회 (제37조~제42조)	8
제 8 장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 (제43조~제49조)	9
제 9 장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제50조~제53조)	9
제 10 장 국제캠퍼스 동아리 (제54조~제58조)	10
제 11 장 심사위원회 (제59조~제65조)	10
제 12 장 법제위원회 (제66조~제70조)	11
제 13 장 공간협력위원회 (제71조~제77조)	12
제 14 장 분과위원회 (제78조~제84조)	13
제 15 장 집행위원회 (제85조~제89조)	15
제 16 장 특별위원회 (제90조~제93조)	15
제 17 장 등록 및 승격 (제94조~제100조)	16
제 18 장 징계 및 포상 (제101조~제111조)	19
제 19 장 선거 (제112조~제119조)	22
제 20 장 재정 (제120조~제126조)	24
제 21 장 총동아리연합회 준비위원회 (제127조~제129조)	25
제 22 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30조~제133조)	25
제 23 장 회칙개정 (제134조~제140조)	26
부칙	27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Yonsei University The General Student Club Union

1996.09.30	일부개정	2007.03.29	일부개정
2008.01.22	일부개정	2010.03.22	일부개정
2010.06.01	일부개정	2012.04.05	전부개정
2012.09.27	일부개정	2012.10.30	일부개정
2013.02.27	일부개정	2013.09.09	일부개정
2013.10.30	일부개정	2013.12.23	일부개정
2014.02.10	일부개정	2015.03.31	일부개정
2015.08.18	일부개정	2015.10.27	일부개정
2015.12.23	일부개정	2017.10.26	일부개정
2018.01.31	일부개정	2018.03.21	일부개정
2018.06.28	일부개정	2018.07.20	일부개정
2018.08.30	일부개정	2018.09.30	일부개정
2018.12.2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약칭 ‘연세대학교 총동연’ 또는 ‘연대 동연’, 이하 본회)이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Yonsei University, The General Student Club Union” (약칭 ‘YONSEI G.S.C.U.’)라 표기 한다.<개정 2012.4.5., 2013.2.27.>

제2조(소재지)

본회 오프라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두되, 국제캠퍼스에서의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파견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에 둔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http://dongari.yonsei.ac.kr>>에 둔다.<개정 2012.4.5., 2013.2.27.>

제3조(목적)

본회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대학 문화 창달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인 들의 역량을 모아 발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 동아리 사회 발전과 건전한 대학문화를 선도하며 학생 자치활동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5.>

제4조(기구)

본회의 의결 기구로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두며, 운영 기구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심사 기구로는 심사위원회를 둔다. 또한, 집행 기구로는 집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4.5.>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아리 자활’ 을 위한 활동
2. ‘동아리 간 유대’ 를 위한 사업
3. ‘동아리 복지증진’ 을 위한 활동
4.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
5. 기타 동아리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2.4.5.]

제 2 장 회 원

제6조(종류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등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이하 본교) 학부과정 소속이 된 재학생이면서 본회에 정식 등록된 본교 내 동아리의 구성원으로 하되, 통상적으로 소관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칭한다.<개정 2018.08.30.>

1. 중앙 동아리(총동아리연합회)
2. 단과대 동아리(각 단과대학)
3. 국제캠퍼스 동아리<신설 2015.03.31.>
4. 일반 동아리(기타)

②1항 1호의 경우 매년 본 회의 ‘중앙 동아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식 등록되며, 요건에 따라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로 나뉜다.<개정 2012.4.5.>

③1항 2호의 경우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또는 협의회, 자치 단체 등. 이하 단대 동연)에 소속한 동아리의 구성원을 말하며, 해당 단대 동연이 본회에 등록함으로써 정식 등록된다.<신설 2008.1.22.>

④1항 3호의 경우 매년 본 회의 ‘국제캠퍼스 동아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식 등록된다.<개정 2018.08.30.>

⑤1항 4호의 경우는 본 회 집행부에 회칙, 회원명부, 활동자료 등을 서면 제출함으로써 정식 등록된다.

⑥대학원생, 국내외 타대학에서 본교로 수학하러 온 교환학생, 원주캠퍼스 학생, 어학당 학생 등은 1항의 본교 학부과정 소속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신설 2018.08.30.>

제7조(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본회의 모든 회원들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 활동에 관련한 제반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②중앙 동아리의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는 본회의 회장단 또는 산하 단체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2.4.5.>
- ③중앙 동아리의 정동아리는 본회의 회장단 또는 산하 기구의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④중앙 동아리의 준동아리는 본회의 회장단을 제외한 산하 기구의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신설 2018.3.21.>
- ⑤본회와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8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본회 의결기구를 통하여 정해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동 아 리 총 회 <신설 2012.4.5.>

제9조(지위)

동아리 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토론·의결한다.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 ①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결위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 ②전향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소집)

- ①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요구와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1주일 안에 소집 공고한다.
- ②총회의 소집과 상정안건은 개회 7일 전에 의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소집과 상정안건을 공고 할 수 있다.

제14조(정족수)

- ①총회는 의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토론과 의결에 대한 사항은 “의사진행세칙”에 의거한다.

제 4 장 동 아 리 총 투 표

제15조(지위)

동아리 총투표(이하 총투표)는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투표이다.

제16조(권한)

총투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투표한다.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투표한다.

제17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8조(실시)

- ①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요구와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1주일 안에 실시를 공고한다. 다만 긴급하게 요구되

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발안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총투표 실시와 투표 안건은 투표일 10일 전에 의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전에 총투표 실시와 투표 안건을 공고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4.5.]

제19조(의결)

총투표는 안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본회의 재적 동아리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회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집행 및 감독)

회칙에 의거하여 실시된 총투표를 집행하고 감독할 의무는 본회의 장에게 있다.

제 5 장 동 아 리 대 표 자 회 의

제21조(지위)

동아리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실질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제22조(권한)

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의 각 국과 특별 기구의 사업 기획 심의·승인권
2.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의결권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확정권
4. 본회의 자치 활동을 위한 임시·상설 특별 기구 설치권
5. 중앙동아리 등록에 관한 인준<개정 2012.4.5.>
6. 중앙동아리의 준동아리에서 정동아리로의 승격에 관한 인준<개정 2012.4.5.>
7. 징계 회부된 동아리에 대한 심의·의결<개정 2012.4.5.>
8. 본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탄핵안 상정<개정 2012.4.5.>
9.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발안·심의·의결권

제23조(구성)

- ①분과위원회 회장단 그리고 각 중앙동아리의 장으로 구성한다. 단, 중앙동아리의 장의 경우, 구성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속 동아리의 장임을 집행부에 확인시켜야 한다.
- ②본회의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나, 분과위원회 회장단, 중앙 동아리의 장 혹은 그 대리인 이외에는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
- ③동아리의 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동아리의 임원 중 한 명이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할 수 있다.
- ④전 항을 위한 내용은 제28조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8.01.31.]

제24조(의장)

- ①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결위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②전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5조(소집 및 안건상정)

①대표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3·6·9·12월 말에 소집하도록 하며, 임시회는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본회의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15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1. 총동아리연합회장 발의
2.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3.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4. 분과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5. 대표자회의 재적 5 분의 1 이상의 동의

제26조(정족수)

①대표자회의는 의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회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토론과 의결에 대한 사항은 “의사진행세칙”에 의거한다.<신설 2012.4.5.>

제27조(의결 제척사유)

①의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2.4.5.>

1. 자신에 관한 사항
2. 중앙 동아리를 제외한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

②의장은 회의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량한 참석자에게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의사 진행에 협조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단, 2회의 권고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의장은 해당 참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신설 2008.1.22.>

③전 항에서 퇴장당한 참석자가 동아리의 장일 경우에는 해당 동아리를 결석 처리한다.<신설 2008.1.22.>

제28조(공결)

①공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구성원이 정당하고 증명 가능한 사유로 결석을 사전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공결로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직계존속 및 친·인척(6촌 이내)의 경조사
2. 국가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
3.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4. 정부 또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
5. 동아리의 연간 행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대표자회의의 일시와 중복될 때
6. 기타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③전 항의 사전 통보라 함은 대표자회의의 소집일 기준 1일전 까지를 말하며, 당일통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긴급하거나 불가항력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④공결처리를 위해서는 결석계(서식#1)와 위임장(서식#2)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⑤결석계는 사유 발생 후 10일 내로 당사자가 동아리 연합회 집행부에 서면 제출하며, 위임장은 수임인이 대표자회의 당일 회의장에서 개회선언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 제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유 발생 후 10일 내로 당사자가 서면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사유 발생 후 10일 내로 서면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08.30.>

1. 직계존속 및 친·인척(6촌 이내)의 경조사

2. 국가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

3.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4. 정부 또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

5. 동아리의 연간 행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대표자회의 일시와 중복될 때

6. 기타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⑥위임장의 수임인 자격은 해당 동아리의 임원에 한정 한다. 단, 동조 2항 5호의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 출석을 예외로 두며, 그 외에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이 대표자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⑦대표자회의 이후 10일 이내로 본회의 장은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그 정당성(결석사유에 대한 적정성, 구비서류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2.4.5.]

제29조(출결)

①제28조에 의거하여 다른 여타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출석, 지각, 조퇴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7.>

1. 공고된 개회시간 후 5분 이내: 출석

2. 공고된 개회시간 후 5분 ~ 45분까지: 지각

3. 공고된 개회시간 후 45분 이후: 결석

4. 회의 안건이 모두 처리되기 전에 퇴장: 조퇴 <개정 2013.3.25.>

③지각이나 조퇴를 합쳐 2회가 되었을 때에는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④동 회기에 지각과 조퇴를 거듭한 경우에도 전 항과 같다.

⑤대표자회의 위임의 경우 지각 및 조퇴는 결석과 양립할 수 없으며, 가장 상위의 처벌인 결석만 인정하도록 한다. <신설 2014.03.25.>

⑥출석에 관한 기록은 6개월 후 말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개정 2015.03.31.>

제30조(익명성)

①대표자회의 출석 확인 및 회의 진행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②본회의 장은 전항이 위배된다고 판단될 시 즉각 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

③1항이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대표자회의 구성원은 즉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전항의 문제가 수정될 때까지 회의는 무기한 연기된다.

⑤익명성 침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있다.

⑥본회의 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출석 확인 및 회의 진행 방식을 당선 이후 첫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인준받아야 한다.

⑦공식적으로 단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본회의 구성원은 이에 관한 안건을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⑧익명성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본회의 장은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⑨이외 익명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동아리 대표자회의 익명성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03.31.]

제 6 장 총동아리연합회장 · 부총동아리연합회장

제31조(지위 및 역할)

①총동아리연합회장(이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 · 의결 기구의 의장이 된다.

②부총동아리연합회부회장(이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결위 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결위 이외의 사유로 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 할 때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권한 및 책임)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1. 총학생회 운영 위원회의 위원
2. 총투표 실시권 및 총투표안 발의권
3. 대표자회의 소집권
4. 본회의 집행위원회 위원 임명 및 해임권
5. 특별 기구 개설의 발의권
6. 예산 집행의 승인권
7. 동아리 징계에 대한 발의권
8. 회칙 개정안 발의권
9. 기타 중요 안건 발의권
10. 동아리인의 안정적 활동 보장
11. 동아리인의 의사의 민주적 수렴과 이에 성실한 수행

제33조(임기)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하 회장단)의 임기는 종료된다.

1. 회장단 선거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회장단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본조 개정 2022.10.05.]

제34조(해임)

①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회장 또는 부회장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본 회칙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안을 상정 할 수 있다.<신설 2008.1.22.>

③전항(前項)의 안건 상정은 본회에 등록된 중앙 동아리의 장 10인과 중앙 동아리 구성원 15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충족 시에는 회장은 2주 이내로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만 한다.<개정 2012.4.5.>

④대표자회의에서 탄핵 상정안이 의결되면, 당사자는 탄핵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신설 2008.1.22.>

⑤탄핵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는 상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자동 소집된다, 단, 회장단 모

두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을 때에는, 전 항의 대표자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여 진행하도록 한다.<신설 2012.4.5.>

⑥총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심의·의결한다. 단, 의결은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2.4.5.>

제35조(선서)

회장단은 임기 개시 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임기 동안 책임감 있게 활동할 것을 연설·발언·선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36조(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제외한 회장단이 모두 결위 시에는 대표자회의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 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제 7 장 총 동 아 리 운 영 위 원 회 <개정 2018.7.20.>

제37조(지위)

총동아리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기구이다.

제38조(권한 및 책임)

총동아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1. 본회 운영위원
2. 본회 주요 사업에 의안 상정
3. 예산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의안 상정
7. 동아리인의 안정적 활동 보장
8.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목적 실현보다는 본 회칙 ‘제3조(목적)’, ‘제5조(사업)’를 위한 성실한 직무 수행

제39조(구성)

- ①본회의 회장단, 각 단동연의 장, 각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된다.
- ②사안이 중앙동아리에 한정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된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07.20.>

제40조(의장)

- ①총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결위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 ②전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총동아리운영위원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1조(소집)

총동아리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소집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소집하도록 한다. 단, 임시회에

한해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정족수)

총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의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회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8 장 중 앙 동 아 리 운 영 위 원 회 <신설 2018.06.28.>

제43조(지위)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운영 기구이다.

제44조(업무 및 권한)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는 중앙동아리의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중앙동아리의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구성)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 각 분과위원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6조(의장)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총동아리연합회장 결위 시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제47조(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안건이 없을 시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임시회의는 총동아리연합회장 혹은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48조(의사 정족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49조(의결 정족수)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의결 시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단 과 대 학 동 아 리 연 합 회 <신설 2007.3.29.>

제50조(구성)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이하 단동연)는 단동연에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51조(회장)

단동연 회장은 단동연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52조(업무 및 권한)

- ① 단동연은 단과대학 동아리의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본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 <개정 2010.6.1, 2012.4.5.>

제53조(회칙)

단동연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동연 회칙에 정한다.

제 10 장 국 제 캠퍼 스 동 아 리 <신설 2015.03.31.>

제54조(지위)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에 지부를 두며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자체 단체를 일컫는다.

제55조(권리)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Y-Plaza 내 자치공간 이용권
2. 총동아리연합회에서 홍보 지원
3. 신규등록 및 재등록을 통해 효력이 인정되는 동아리에 한해 Y-Plaza 내 자치공간 점유권 부여

제56조(자격)

- ① 본회의 ‘국제캠퍼스 동아리 신규등록’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된다.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국제캠퍼스 동아리 재등록 요건’ 을 갖추어야만 지위가 유지된다.
- ③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제캠퍼스동아리세칙” 에 의거한다.
 1. 본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단체
 2. 회칙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단체
 3. ‘국제캠퍼스 생활 단위’ 재학생 10명 이상의 회원을 유지
 4. 한 단과대, 하우스의 비율이 40% 이하
 5. 당해 활동 계획서 구비

제57조(등록)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되며 이는 “국제캠퍼스동아리세칙” 에 의거한다.

제58조(징계)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징계처리를 받으며 이는 “국제캠퍼스동아리세칙” 에 의거한다.

제 11 장 심 사 위 원 회 <신설 2012.4.5.>

제59조(지위)

심사위원회는 본회의 심사기구이다.

제60조(권한 및 책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1. 본회 심사위원
2. 중앙동아리의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 심의·의결
3. 중앙동아리의 준동아리에서 정동아리로의 승격안 심의·의결
4. 동아리에 징계안 관한 심의·의결권
5. 동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관련하여 해당 동아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6. 정기 지원금에 대한 배분 심사권
7.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심사하되, 형평성·다양성·상징성 또한 주요한 근거로 두어 판단해야 함

제61조(구성)

본회의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된다.

제62조(의장)

- ①심사위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결위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 ②전향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3조(소집)

- ①심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상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회의 소집이 예정되어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와 그 소집일과 같이한다.
- ②재등록 심사가 있는 9월 대표자회의에 한해서는 전 항에 예외를 두며, 신규등록과 승격·징계 심사 이전에 반드시 재등록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집한다.

제64조(정족수)

심사위원회는 의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회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의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65조(심사 및 운영)

- ①심사 대상 동아리의 대표를 소환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 할 수 있다. 단, 해당 대표는 질의응답이 종료된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 ②전 항 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세칙”에 의거한다.

제 12 장 법 제 위 원 회 <신설 2018.12.27>

제66조(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는 본회 회칙 개정 및 세칙 제, 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제67조(법제위원회의 역할)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안 또는 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2. ‘회칙 및 세칙 등’ (이하 법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제68조(법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위원회에 법제위원을 둔다.

②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들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단,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중 2인
3. 현직 중앙동아리 대표자 중 2인
4. 전직 중앙동아리 대표자 중 2인 이하

③ 법제위원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때로부터 법제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④ 법제위원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해당 회기 총동아리연합회 임기의 말일로 한다.

⑤ 법제위원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임 법제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위원의 인준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69조(법제위원장단)

① 법제위원장단은 법제위원장과 부법제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법제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법제위원장과 부법제위원장은 법제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28.>

③ 법제위원장단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해당 회기 총동아리연합회 임기의 말일로 한다.

④ 법제위원장단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 선출하고 이를 동아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새로 선출된 법제위원장단은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제70조(법제위원회 회의)

① 법제위원회의 의장은 법제위원장이 맡는다. 법제위원장이 결위 시 부법제위원장이 맡는다.

② 법제위원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③ 회의는 일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법제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단,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제 13 장 공 간 협 력 위 원 회 <신설 2018.1.31.>

제71조(지위)

공간협력위원회는 본회의 중앙동아리 간 공간, 소음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하는 기구이다.

제72조(권한 및 책임)

공간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1. 본회 공간협력위원
2. 중앙동아리 간의 공간, 소음 문제를 중재
3. 중앙동아리 간의 공간,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
4.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심사하되, 형평성·다양성·상징성 또한 주요한 근거로 두어 판단해야 함

제73조(구성)

본회의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들과 각 분과 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중앙동아리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제74조(의장)

- ① 공간협력위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결위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 ② 전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간협력위원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5조(소집)

- ① 공간협력위원회는 사안에 상관없이 상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6조(정족수)

공간협력위원회는 의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회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의 만장 일치를 지향하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77조(심사 및 운영)

- ① 공간협력위원회는 중재해야하는 중앙동아리들의 대표를 소환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 할 수 있다. 단, 해당 대표는 질의응답이 종료된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 ② 전 항 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공간협력세칙”에 의거한다.

제 14 장 분 과 위 원 회 <신설 2012.4.5.>

제78조(지위)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에 소속된 중앙 동아리를 대표한다.

제79조(권한 및 책임)

본회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해당 분과 소속 동아리의 대표
2. 본회의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
3. 분과 소속 동아리인의 안정적 활동 보장
4. 분과 소속 동아리인의 의사의 민주적 수렴과 이에 성실한 수행
- 4의2. 이를 위하여 분과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분과회의 세칙’에 의거한다.

제80조(구성)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공연예술
2. 사회활동
3. 종교
4. 창작예술
5. 체육
6. 학술교양

제81조(자격 및 선출)

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분과위원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1. 분과위원장 후보와 부분과위원장 후보 각 한 명이 등록 마감일 기준 중앙동아리(정동아리와 준동아리 모두 포함)를 2학기 이상 활동했으며 총동아리연합회 회원인 조
2. 분과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을 의거하는 분과별 회원 추천 수와 분과별 추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조
3. 분과위원회칙과 이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

② 매년 11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 분과위원장단을 선출한다.

③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④ 1항 1호의 중앙동아리(정동아리와 준동아리 모두 포함)를 2학기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증빙은 분과위원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에 의거한다.

[본조 개정 2018.08.30.]

제82조(임기)

분과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12월 대표자회의(정기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83조(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① 분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분과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분과의 행정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하여 전대 분과위원회를 승계한다.

② 분과위원회 선거 무산되었을 경우 분과 회의를 통하여 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은 중앙동아리(정동아리와 준동아리 모두 포함)를 2학기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가 가진다. <개정 2018.03.21.>

④ 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분과위원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⑤ 후대 분과위원장이 선출되고 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해산한다.

[본조 개정 2017.10.26.]

제84조(분과 보궐선거) <신설 2015.12.23.>

① 분과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대책위원회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잔여 임기의 판단은 6월 대표자회의 개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선거 기간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로 판단한다.

②보궐선거 요건이 충족되면 분과 비상대책위원장은 분과 보궐선거를 총동아리연합회에 즉시 요청한다.

③총동아리연합회는 2항의 요청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단, 복수의 분과가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조정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장 집 행 위 원 회 <전문개정 2012.4.5.>

제85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86조(업무 및 권한)

①집행위원회는 회장의 통할 하에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업 집행을 총괄한다.

②집행위원회는 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동아리 연합회 관련 사업 집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87조(의무)

①집행위원회는 총회, 총투표, 대표자회의의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제88조(임명 및 구성)

①집행위원회 체계는 회장이 결정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②집행위원회의 각 집행부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89조(해임)

집행위원회의 집행부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 16 장 특 별 위 원 회

제90조(지위)

본회 산하 특별 기구이다.

제91조(조건 및 승인)

①특별위원회는 3개 이상의 정식 등록 동아리 및 10인 이상의 동아리인으로 구성되고, 대표자회의 재적 15인 이상의 발의나 본회의 장의 발의로 대표자회의에서 개설 심의된다.

②특별위원회 개설은 총회나 총투표, 혹은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③특별위원회는 개별 동아리를 넘어서 학내외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정치적,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2조(권한 및 책임)

- ①특별위원회는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②특별위원회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활동 사항과 결산을 보고할 책임을 지닌다.

제93조(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특별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학생회비 중 일정한 금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 17 장 등 록 및 승 격 <전문개정 2012.4.5.>

제94조(신규등록)

- ①중앙 동아리 준동아리로의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본회에 등록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②중앙 동아리의 이외에 경우에는 ‘제6조 3항’, ‘동조 4항’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③등록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통과 후에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의결을 통해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9.9.>
 1. 등록 서류 준비 및 작성
 2. 개강일로부터 한 달 이내까지 본회의 장에게 서면제출<개정 2018.08.30.>
 3. 심사위원회 소집 및 구비서류 요건 검토<개정 2012.4.5.>
 4.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인준안 상정
 5.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분의 1 이상 찬성시 가결
 6.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개정 2013.9.9.>
 7.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장이 공고<개정 2013.9.9.>
- ④구비 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서 1부<개정 2013.9.9.>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개정 2013.9.9.>
 3. 회칙 1부<개정 2013.9.9.>
 4. 최근 2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개정 2012.9.27.>
 - 4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개정 2012.9.27.>
 5.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6. 최근 2년간 결산안 1부<개정 2012.9.27.>
 - 6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7. 연간 예산안 1부
 8.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개정 2013.9.9.>
 9. 발기인(회원)명단 1부<개정 2010.6.1.>
 - 9의2.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5.08.18.>
 - 9의3.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50%이하이어야 한다.<신설 2018.08.30.>
 10. 발기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정규회원(재적생)의 재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개정 2014.6.3.><개정 2015.08.18.>

11. 중앙동아리 100명 이상의 지지서명<개정 2018.08.30.>

11의2. 중앙동아리 등록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현 중앙동아리 회장 10분의4 이상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8.08.30.>

⑤그 밖에 신규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에 의거한다.<신설 2018.08.30.>

제95조(신규등록 절차)

①신규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본회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요건 구비를 심사한다. 단, 구비 서류 미비에 한해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차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1차 심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개최한다.<개정 2012.4.5.>

②구비 서류와 심사 기준에 흠이 없을 경우에 본회의 장은 다가오는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신규등록 인준안을 상정한다. <개정 2010.3.22.><개정 2012.4.5.>

③심사위원회의 대표 1인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인준과정을 진행한다.<개정 2012.4.5.>

④신청 동아리의 대표자는 대표자회의에 배석하여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4.5.>

⑤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된 동아리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다.<신설 2010.6.1.><개정 2012.4.5.>

⑥그밖에 신규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에 의거한다.<신설 2018.08.30.>

제96조(준동아리 효력)

①준동아리로 신규등록된 동아리는 2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지며, 단 준동아리로 강등된 동아리는 1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개정 2012.4.5.>

②준동아리는 대표자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주어진다.<개정 2012.4.5.>

③준동아리는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2.4.5.>

④준동아리는 본회 회장단과 산하 기구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다.<개정 2018.3.21.>

⑤준동아리는 본회의 회장단을 제외한 산하 기구의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신설 2018.3.21.>

⑥준동아리는 본회칙과 심사세칙을 준수하는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신설 2012.4.5.>

⑦준동아리는 모든 정동아리가 자치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자치공간이 남았을 경우, 남은 자치공간을 보유할 수 있다.<신설 2018.08.30.>

제97조(재등록)

①중앙 동아리(정/준동아리)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회에 재등록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중앙 동아리의 이외에 경우에는 ‘제6조 3항’, ‘동조 4항’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③재등록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통과 후에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의결을 통해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9.9.>

1. 등록 서류 준비 및 작성

2. 개강일로부터 한 달 이내까지 본회의 장에게 서면제출<개정 2012.4.5.><개정 2015.08.18.>

3. 심사위원회 소집 및 구비서류 요건 검토<개정 2012.4.5.>

4.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인준안 상정

5.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분의 1 이상 찬성시 가결

6.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개정 2013.9.9.>

7.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장이 공고<개정 2013.9.9.>

④구비 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단체(중앙동아리) 재등록 신청서 1부<개정 2013.9.9>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개정 2013.9.9.>

3. 회칙 1부<개정 2013.9.9.>

4.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4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5.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 결산안 1부<개정 2012.9.27.>

6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7. 연간 예산안 1부

8. 회원명단 1부<개정 2010.6.1.>

8의2.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5.08.18.>

8의3.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50%이하이어야 한다.<신설 2018.08.30.>

9. 정회원(재적생)의 재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개정 2014.6.3.><개정 2015.08.18.>

⑤그밖에 재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에 의거한다.<신설 2018.08.30.>

제98조(재등록 절차)

①매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의 인준을 통해 재등록하며, 그 대상은 중앙 동아리(정/준동아리)에 한한다.

②재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본회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요건 구비를 심사한다. 단, 구비 서류 미비에 한해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차 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1차 심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개최한다.<신설 2012.4.5.>

③구비 서류와 심사 기준에 흠이 없을 경우에 본회의 장은 다가오는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재등록 인준안을 상정한다. <신설 2012.4.5.>

④심사위원회의 대표 1인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인준과정을 진행한다.<개정 2012.4.5.>

⑤신청 서류에 미비가 있을 시에는 반려하며 접수처리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집행실수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동아리에게 서류 흠결·미비로 인한 주의 조치를 할 수 없다.

⑥신청 서류 제출 기한은 접수 마감일 17시로 하고 초과시 주의 처리하며, 기한 초과는 1시간을 넘길 수 없다.

⑦신청 서류 제출 기한 1시간 이후부터는 제출 연장 기한을 설정 할 수 있고, 본 제출 기한으로부터 24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자동 경고 처리한다.

⑧7항의 기한마저 초과하여 제출한 동아리는 자동탈퇴 안건 상정대상이 된다.

⑨권고 2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 신청 서류를 인준절차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탈퇴 처리한다.(자진 탈퇴의사로 간주)

⑩재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아리는 강등 처리한다.

⑪그 밖의 재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에 의거한다.<신설 2018.08.30.>

제99조(승격)

- ①준동아리는 심사위원회의 재등록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9월 대표자회의에서 승격안에 상정될 수 있다.
- ②심사위원회에서는 준동아리 모두를 대상으로 승격을 심사하되, 그 자격은 제91조(준동아리 효력) 1항에 의거한다.
- ③승격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와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를 통해서만 의결될 수 있다.
 1. 재등록 서류 검토 후 승격 후보 동아리 선정
 2. 심사위원회 소집 및 구비서류 요건 검토<개정 2012.4.5.>
 3.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인준안 상정
 4. 심사위원회의 대표 1인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인준과정을 진행한다.<개정 2012.4.5.>
 5.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4.5.>
 6.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분의 1 이상 찬성시 가결
- ④그 밖에 승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에 의거한다.<신설 2018.08.30.>

제100조(정동아리 효력)

- ①승격 절차를 통해 정동아리로 승격된 동아리는 준동아리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 ②정동아리만이 본회 회장단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8.03.21.>
- ③정동아리만이 본회로부터 정기 지원금과 자치공간에 대하여 보장받는다.<신설 2012.4.5.>
- ④정동아리는 본회칙과 심사세칙을 준수하는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신설 2012.4.5.>

제 18 장 징 계 및 포 상 <개정 2012.4.5.>

제101조(징계 알림)

- ①본회의 장은 징계가 적용된 동아리에게 3일 이내에 징계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본회의 장은 징계사항을 징계 반영 이후 첫 대표자회의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 ③본회의 장은 징계심사 판단의 증거물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징계 대상 동아리는 징계심사 판단의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3.31.]

제102조(징계 유형)

- ①본 회칙에 따라 주의, 자동경고, 경고, 강등, 자동탈퇴, 탈퇴 등이 있으며, 자동경고부터 징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10.30.>
- ②심사위원회와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강등, 탈퇴, 자동탈퇴로 징계할 수 있다.
- ③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고와 경고로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03.31.>

[본조 개정 2015.03.31.]

제103조(자동주의)

- ①자동주의는 행위나 사건 발생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②다음의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1. 대표자회의 지각 또는 조퇴 2회 누적
 2. 대표자회의 결석 1회

3. 재등록 신청 서류 제출 기한 초과시 <신설 2013.10.30.>
4. 본회의 회장단 선거에 앞서 제출기한까지 선거인단 미제출시
5. 본회의 회장단 선거에 앞서 제출연장기한까지 선거인단 미제출시
6. 본회의 회장단 선거 기간에 선거인단 중 과반수가 투표하지 아니하였을 시

[본조 신설 2015.03.31.]

제104조(주의)

- ①본회칙 제3조(목적)를 위한 활동에 비협조적인 동아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1차, 본회의장이 2차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주의 처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03.31.]

제105조(자동경고)

- ①자동경고는 행위나 사건 발생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②다음의 각 호의 경우 경고 1회를 부과한다.
 1. 주의 2회 누적시
 2. 강등안건 부결시
 3. 탈퇴안건 부결시
- ③전 항의 4,5호에 한하여 해당 동아리가 불복시, 대표자회의에 경고무효안건 상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03.31.>

[본조 개정 2015.03.31.]

제106조(경고)

- ①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경고 처리할 수 있다.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시
 2.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시
- ②경고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장은 대상 동아리에 경고심사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3.31.>

2. 본회칙 제59조(지위)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3. 심사위원회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한다.

4. 의결 과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여부만을 표기하는 표결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5. 해당 동아리가 심사 결과에 불복시, 대표자회의에 경고무효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31.>

- ③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 개정 2015.03.31.]

제107조(강등)

- ①강등 대상 동아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심사위원회의 보고와 인준을 통해 처리된다. 그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2. 평소 활동이 부진하거나 건강한 대학 문화 창달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②강등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장은 대상 동아리에게 강등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3.31.>

2. 본 회칙 제59조(지위)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심사위원회의 대표 1인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4.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과 소명의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31.>

5. 대표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한다.

6. 의결 과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여부만을 표기하는 표결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③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가결시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되고, 준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며 일반동아리가 된다.

2. 부결시 자동경고 1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5.03.31.>

2의2. 해당 동아리가 ‘부결에 따른 자동경고 1회 부여’에 불복시, 대표자회의에 경고무효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31.>

[본조 개정 2013.03.31.]

제108조(탈퇴)

①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와 대표자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탈퇴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1.22.>

②특히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도박이나 폭력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그 즉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상 파악 한 후 대표자회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의결한다.

③탈퇴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장은 심사 대상 동아리에게 탈퇴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3.31.>

2. 본 회칙 제59조(지위)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 2012.4.5.>

3. 심사위원회의 대표 1인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개정 2012.4.5.>

4.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과 소명의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31.>

5. 대표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의결 과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대표자의 소속 동아리를 기재하는 기명 투표에 의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④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가결시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며 일반동아리가 된다.

2. 부결시 자동경고 1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5.03.31.>

2의2. 해당 동아리가 ‘부결에 따른 자동경고 1회 부여’에 불복시, 대표자회의에 경고무효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31.>

[본조 개정 2015.03.31.]

제109조(자동탈퇴)

①자동탈퇴 대상 동아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심사위원회의 보고와 인준을 통해 처리된다. 그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동경고 및 경고 3회 누적

2. 제출 연장 기한까지 재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03.31.>

②자동탈퇴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장은 대상 동아리에게 자동탈퇴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3.31.>

2. 본 회칙 제59조(지위)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심사위원회의 대표 1인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4.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과 소명의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31.>

5. 대표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한다.

6. 의결 과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여부만을 표기하는 표결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③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가결시 학생단체(중앙동아리)에서 탈퇴 처리되며, 일반동아리로 남는다.

2. 부결시 자동경고 1회를 부여하며,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되고, 준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며 일반동아리가 된다. <개정 2015.03.31.>

2의2. 해당 동아리에서 ‘부결에 따른 자동경고 1회 부여’에 불복시, 대표자회의에 경고무효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03.31.>

[본조 개정 2015.03.31.]

제110조(징계 효력 및 소거)

①자동주의 및 주의는 6개월 후 말일이 지나면 차례로 삭제된다. <신설 2015.03.31.>

②자동경고 및 경고 1회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정기 지원금을 5만원 삭감한다. 단 지원금 삭감은 1회에 한한다.

③자동경고 및 경고 2회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정기 지원금을 반으로 삭감한다. 단 지원금 삭감은 1회에 한한다.

④자동경고 및 경고 3회는 대표자회의에 자동탈퇴안건이 상정된다.

⑤자동경고 및 경고는 12개월 후 말일이 지나면 차례로 삭제된다. <개정 2015.03.31.>

⑥자동탈퇴 및 탈퇴 처리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정받은 자기공간을 14일내로 반환한다.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본회 회장의 책임 하에 강제 집행한다.

⑦자동탈퇴안건의 부결에 의하여 정동아리가 준동아리로 강등된 경우, 경고 2회를 소거한다. <신설 2015.03.31.>

[본조 개정 2015.03.31.]

제111조(포상)

①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는 동아리에 대하여 본회의 장은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개정 2013.10.31.>

1. 재등록 신청 서류 평가가 우수할 경우

2. 확인 가능한 공적으로 인하여 대내·외 기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3. 1년 간 분과 회의의 참석률이 우수하여 분과 회의에서 선정된 경우

②자세한 포상 기준과 방안은 “심사세칙”에 의거한다.

[본조 개정 2018.01.31.]

제 19 장 선 거 <개정 2022.10.05.>

제112조(시기)

본회의 선거는 매년 2학기 말에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본조 개정 2022.10.05.]

제113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관위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중앙동아리 회원 3~10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05.>
- ②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③ 선관위는 선거 감독에 필요한 실무를 집행할 부서를 둘 수 있다.
- ④ 선관위의 구성과 역할 및 관련 구체적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2.10.05.>
- ⑤ 선관위는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선거 운동을 감독하며, 본 회칙과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을 위반한 선본이 있을 경우 해당 선본을 징계한다. <개정 2022.10.05.>
- ⑥ 선관위는 독자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외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05.>

[본조 개정 2022.10.05.]

제114조(투표권)

투표권은 각 중앙동아리 당 최대 40인까지 가지며, 최소 20인의 선거인 명단을 총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한다. 단, 선거인단 중 과반수가 투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2.10.05.]

제115조(피선거권)

- ①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2.10.05.>
 1. 3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 재학생
 2. 중앙동아리(정동아리에 한함)를 8개월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 ② 본회에 정식 등록된 중앙동아리 회장 10분의3 이상을 포함하여, 중앙동아리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2.10.05.>

[본조 개정 2022.10.05.]

제116조(선거 방법)

- ① 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간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개정 2022.10.05.>
- ② 각 선본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운동 관련 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5.>
- ③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본조 개정 2022.10.05.]

제117조(보궐 선거)

- ① 9월 전에 회장단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2.10.05.>

②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③보궐선거를 하더라도 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05.>

1. 회장단 선거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회장단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본조 개정 2022.10.05.]

제118조(재선거)

①사유를 불문하고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회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2.10.05.>

②재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③재선거를 하더라도 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05.>

1. 회장단 선거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회장단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본조 개정 2022.10.05.]

제119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0.05.]

제 20 장 재 정

제120조(수입)

- ①수입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②본회의 목적 안에서 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본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 ④각 사회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121조(예산 편성)

- ①예산은 본회의 수입으로 구성한다.
- ②예산은 본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편성해서 대표자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는다.
- ③예산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제122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본회 회장단의 임기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3조(예산 집행)

예산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연도 예산을 맡은 집행부가 집행한다.

제124조(동아리 지원)

본회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25조(결산 보고)

- ①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
- ②결산은 매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제126조(이월)

- ①신임 회장단의 임기 개시 시 예산의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임 회장단이 꾸리는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전대(前代) 집행위원회 내에서 책임진다.
- ②이월 전 행사에 대한 지원금은 전대(前代) 집행위원회가 책임지고 지급을 하되, 불가피할 경우 후대(後代) 집행위원회가 이월 받는다.

제 21 장 총 동 아 리 연 합 회 준 비 위 원 회

제127조(구성)

총동아리연합회 준비위원회는 신임 회장단이 구성하고 신임 집행위원회의 인선을 끝으로 해산된다.

제128조(업무)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본회의 집행위원회 인선에 관한 일정 및 관계 업무
- 2. 본회의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사업

제129조(인선 소위원회)

- ①인선 소위원회는 신임 회장이 구성하고 본회의 집행위원회 인선에 관한 제반 업무를 책임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②인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인선 소위원회는 12월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끝으로 모든 인선을 마무리하고 해산한다.
- ④인선 소위원회가 해산한 후의 인선은 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 22 장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신설 2008.1.22.>

제130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본회의 행정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하여 전대(前代) 회장단 및 집행부를 승계한다.

제131조(권한과 책임)

본회의 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32조(구성)

- ①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비상대책위원장(아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비대위원장의 자격은 전·현직 중앙동아리운영위원만이 가진다. <개정 2021.4.28.>

제133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회장단 선거 종료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표자회의까지로 한다.
[본조 개정 2022.10.05.]

제 23 장 회 칙 개 정 <신설 2007.3.29.>

제134조(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은 본회 구성원의 1/10이나 동아리 대표자 회의 재적의 과반수, 혹은 본회의 장의 요구로 발의한다.

제135조(절차)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본회의 장은 1주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의결)

- ①대표자 회의 재적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를 수정하여 투표에 부친다.
- ②표결 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대표자의 소속 동아리를 기재하는 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137조(공포 및 효력발생)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본회의 장이 즉시 공포한 뒤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회의 장이 공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칙 개정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그 효력이 있다.<개정 2012.4.5.>

제138조(시행 세칙)

- ①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행 세칙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5.>
<개정 2013.9.9.>
 1. 동아리 연합회 의사 진행에 관한 세칙
 2. 동아리 연합회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
 3. 동아리 연합회 분과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
 4. 동아리 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
 5. 동아리 연합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칙
 6. 동아리 연합회 예산자치위원회 시행에 관한 세칙[효력 잠정보류 2013.6.4.]
 7. 푸른샘 정관(푸른샘 이용에 관한 세칙)
 8. 총동아리연합회 국제캠퍼스 동아리에 관한 세칙<신설 2015.03.31.>
 9.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익명성에 관한 세칙<신설 2015.03.31.>
- ②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한다. <개정 2018.09.30.>
 1.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된 후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
 2. 중앙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제139조(소급적용 여부)

- ① 본회 회원의 행위나 사건으로 인한 회칙적용은 행위완료 시점 당시의 회칙에 따른다.
- ② 누적된 징계의 효력은 회칙의 개정 시점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본조 신설 2012.9.27.]

제140조(회칙의 흠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에 의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본교 규정이나 대한민국 헌법 및 그 하위 법규, 그리고 관습과 관례에 의한다.<개정 2012.4.5.>

부 칙 <1996.9.00>

제1조(회칙 발표)

본 회칙은 공시 1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 개정 내용에 따른 발표 시한에 대한 특별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회칙 개정)

- ① 동아리 대표자 20인의 서명이나 동아리 연합회장이 발의한다.
- ② 회칙의 개정은 대표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회칙 개정안은 1항의 요건을 만족시켜 대표자 회의 3일전까지 동아리 연합회에 제출한다.
- ④ 개정된 회칙은 회장이 1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회칙의 흠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4조(시행 세칙)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행 세칙을 둘 수 있다.

제5조(특별 부칙)

제 48조 가등록에 관한 조항은 96년 9월 대표자 회의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29.>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 다음날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기간)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달 별로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여타 효력)

본 회칙 시행 당시의 모든 상황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 칙 <2008.1.2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기간)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달 별로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여타 효력)

- ① 본 회칙 시행 당시의 모든 상황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 ② 제 44조의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0.3.2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3월 22일 개정안이 승인될 때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기간)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달 별로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여타 효력)

본 회칙 시행 당시의 모든 상황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 칙 <2010.6.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6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기간)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달 별로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여타 효력)

본 회칙 시행 당시의 모든 상황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 칙 <2012.4.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4월 5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보장)

①삭제<개정 2013.2.27.>

②본 회칙 시행 당시의 중앙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지위는 정동아리로 보장하되, 가등록 동아리는 준동아리로 한다.

부 칙 <2012.9.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9월 27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2.10.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0월 30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3.2.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2월 27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3.9.9.>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9월 9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효력 잠정보류)

본 회칙 제117조 1항 6호에 대하여서는 학교본부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의 지급방식이 변경될 때까지(법인카드에서 현금으로 지급) 그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한다.

제3조(효력 재발생)

총학생회비 납부율에 따라 해당 학기에 적용할 예산규모를 아래와 같은 예시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총학생회비 납부율 40%미만일 때, 본회 운영비(학생회비)에서 0% 배정
- 2) 총학생회비 납부율 40%에서 60%일 때, 본회 운영비(학생회비)에서 10% 배정
- 3) 총학생회비 납부율 60%에서 80%일 때, 본회 운영비(학생회비)에서 20% 배정
- 4) 총학생회비 납부율 80%초과일 때, 본회 운영비(학생회비)에서 25% 배정

제4조(효력 잠정보류의 제한기간)

제2조의 기간이 2013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6학기동안 지속되면 해당 세칙과 관련 내용은 모두 파기하도록 한다.

부 칙 <2013.10.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안 통과 즉시 공포하지 않은 관계로 본회 회칙 제108조(공포 및 효력발생)에 의거 2013년 11월 20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3.12.2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2월 23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3.2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3월 28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6.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6월 3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5.04.0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4월 6일부로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2.4.5.>

결 석 계 (제출용)

동아리명		성 명	
학 번		연 락 처	
사 유			
증빙서류	유 / 무	증빙서류 내용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결 석 계 (보관용)

동아리명		성 명	
학 번		연 락 처	
사 유			
증빙서류	유 / 무	증빙서류 내용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연 세 대 학 교
총 동아리연합회



문서번호: 총동연40-000

활동(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연 돌 이 (漢文) 延 丕 伊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학 번	2012123456		소 속		
	주 소	등분상 주소				
활 동 사 항	단 체 명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 동아리 공식명 」				
	단체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창립일자	2000년 00월 00일		대표자 성명	세 순 이	
	활동(경력) 기 간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00 년 00 개월 활동)				
	활동내용					
	확 인 자	직 위	연세대학교 제00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성 명	홍 길 동 (인)

위와 같이 상기인의 활동(경력)을 증명합니다.

용 도 : 경력 확인용

20 년 01 월 01 일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210mm×297mm 180g [일반용지]



연 세 대 학 교
총 동 아 리 연 합 회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대강당 113호
Tel : (02)2123-3646
<http://dongari.yonsei.ac.kr>



YONSEI UNIVERSITY
General Student Club Union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Auditorium 113
Tel : (02)2123-3646
<http://dongari.yonsei.ac.kr>

동 아 리 활 동 증 명 서

단 체 명 : 연세대학교 중앙 OO동아리(동아리명)
이 름 : 연돌이
학 과 : 단과대학 학과명
학 번 : 2011100011
생 년 월 일 : 2000년 00월 00일
활 동 내 용 : 동아리 활동내용

위 사람은 2000년 00월부터 2000년 00월까지 00개월간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동아리명”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회장, 부회
장, 총무 등 간부를 역임하였을 경우, “~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0년
(1,2)학기 (직책)을 역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추가)

2019년 00월 00일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장

문서번호: 총동연-40(대수)-중앙(동아리 소속)-000(공문번호)

- 34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06.23>



연 세 대 학 교
총 동 아 리 연 합 회